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3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창업기업·벤처기업 투자자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3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8. 7.
- (3) 회 부 일 : 2025. 8.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창업기업·벤처기업 투자자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 ○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내 중소기업 한정)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내 중소기업 한정)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 파생상품·주식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투자업자로서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위험회피 목적에 한정) - 금융투자업자로서 시장조성자가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 적용기한 -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연장</u> - <u>2028년 12월 31일</u>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추경호의원안 2025. 8. 7. 제출(의안번호 제12031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2건의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및 파생상품·주식 시장조성자¹⁾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²⁾ 적용기한을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의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 * 시장조성: 투자매매업자가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장조성자는 수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호가를 제시하여 해당 시장 관련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020. 2. 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5년 12월 31일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④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한정)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⑤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한정)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와 관련한 2024년 실적은 274억원이고, 2025년은 204억원, 2026년은 232억원의 감면을 전망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74	204	232

*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또한, 파생금융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증권시장 시장조성자가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음.

참고로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와 관련한 2024년 실적은 567억원이고, 2025년은 342억원, 2026년은 387

억원의 감면을 전망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567	342	387

*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려는 부분과 ② 과생상품·주식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동 조세특례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후 그 주식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위축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둘째, 창업 초기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수단 중 정부 정책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³⁾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간벤처기업에 세제지원을 통해서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됨.

□ 다음, 파생상품시장·증권시장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명시적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유동성 개선⁴⁾을 통한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둘째,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에 따르면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를 통한 시장조성자의 활동은 대상종목의 거래 및 유동성 지표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두 건의 개정안 모두 3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

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9,101개를 대상으로 2021년 실시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은 51.0%이며, 자금조달 방법 중 정부 정책지원금(R&D, 융자, 보증서 지원 등) 의존도는 64.1% 수준임.(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p.45·46, 2021)

4) 시장조성 행위는 특성상 빈번한 거래를 동반하는데 매 거래시마다 거래세가 발생하면 시장조성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시장조성자는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의무를 지는 대신에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차액을 취하게 되는데 증권거래세의 존재는 이 차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행위를 제약하게 됨.

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